



**조 례**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5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7월 2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교육 복지 향상과 자립,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촉진시킴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교육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안 제6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59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7월 2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 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 제정이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정서적·경제적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가족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애인 가족 지원시설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우리구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나.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제5조)
- 다.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라. 수행기관에 관한 지도·감독(안 제7조)

##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9 - 61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흑석동 신축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동 작 구 청 장

#### ○ 도로명주소

| 소재지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일자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흑석동<br>173-52, 173-14,<br>173-18, 173-25,<br>173-26, 173-27,<br>173-51, 173-53,<br>173-54, 173-55,<br>173-56, 173-120,<br>173-121, 198-92 | 흑석로<br>13길 25 | 2019-<br>07-18 | 구립어린이집<br>신축 | 2010-<br>06-10 | 흑석로의 시작지<br>점에서부터 왼쪽<br>으로 일곱 번째로<br>분기되는 도로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9070)에 문의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http://www.dongjak.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9 - 62호

## 동작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연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작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동 작 구 청 장

1. 조사취지 : 추정되는 빈집의 실질 거주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2.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시행령 제8조
3. 조사기간 : 2019. 2. 1. ~ 9. 20.
4. 조사대상 : 동작구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

[빈집 추정기준(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103호))]

| 구분     | 추정 사용량  |
|--------|---|
| 전기사용량  |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br>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br>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br>4.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 상수도사용량 |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br>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
| 기타 에너지 | 위에 준하는 경우   |

### 5. 조사의 내용(법 제5조)

- 빈집 여부의 확인
-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대행전문기관 : 한국감정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택과(☎02-820-9782) 및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053-663-8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854호

## 동작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 공고(추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6조에 따라 동작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등에 출입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동 작 구 청 장

1. 사 업 명 : 서울시 전지역 빈집실태조사 용역
2. 출입목적 :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수행
3. 출입기간 : 2019. 7. 25. ~ 9. 20.
4. 출입자소속 : 한국감정원
5. 출입할 건물소재지 : 별첨목록
6. 공고기간 : 2019. 7. 25. ~ 9. 20.

[빈집 추정기준(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103호))]

| 구분         | 추정 사용량  |
|------------|---|
| 전기<br>사용량  |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br>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br>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br>4.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 상수도<br>사용량 |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br>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
| 기타 에너지     | 위에 준하는 경우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택과(☎02-820-9782) 및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053-663-8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할 건물소재지 목록(조사대상 빈집목록 첨부)

| 구분 | 빈집주소         | 구분 | 빈집주소          |
|----|--------------|----|---------------|
| 1  | 만양로12가길 16-6 | 41 | 흑석동 74-7      |
| 2  | 장승배기로20라길 11 | 42 | 흑석동 74-39     |
| 3  | 장승배기로25길 10  | 43 | 흑석동 74-42     |
| 4  | 노량진동 274-45  | 44 | 흑석동 74-64     |
| 5  | 등용로2길 37-6   | 45 | 흑석동 79-26     |
| 6  | 장승배기로15길 33  | 46 | 흑석동 79-55     |
| 7  | 장승배기로13길 90  | 47 | 흑석동 79-63     |
| 8  | 성대로25가길 18   | 48 | 흑석동 79-162    |
| 9  | 성대로25가길 12   | 49 | 흑석동 86-5      |
| 10 | 성대로25가길 10   | 50 | 흑석동 86-39     |
| 11 | 성대로25가길 8    | 51 | 흑석동 86-48     |
| 12 | 양녕로22바길 20   | 52 | 흑석동 86-58     |
| 13 | 성대로 126-11   | 53 | 흑석동 86-59     |
| 14 | 국사봉1길 97-8   | 54 | 흑석동 86-62     |
| 15 | 상도동 279-117  | 55 | 흑석동 86-63     |
| 16 | 상도동 279-558  | 56 | 흑석동 86-64     |
| 17 | 성대로6가길 138-4 | 57 | 흑석동 86-97     |
| 18 | 상도동 283-61   | 58 | 흑석동 86-154    |
| 19 | 상도동 283-173  | 59 | 흑석로 128       |
| 20 | 상도동 283-174  | 60 | 흑석동 252-43    |
| 21 | 성대로6사길 22    | 61 | 현충로 154       |
| 22 | 성대로 140      | 62 | 사당로23길 38-38  |
| 23 | 성대로 142      | 63 | 사당로23길 58-10  |
| 24 | 상도1동 159-158 | 64 | 사당로23길 50-9   |
| 25 | 상도로39길 27    | 65 | 사당로23길 70-33  |
| 26 | 노량진로32길 40   | 66 | 사당로27길 91     |
| 27 | 흑석동 69-8     | 67 | 사당로16사길 16-15 |
| 28 | 흑석동 69-13    | 68 | 대방동 11-91     |
| 29 | 흑석동 69-14    | 69 | 등용로8길 78      |
| 30 | 흑석동 69-19    | 70 | 등용로10가길 28-6  |
| 31 | 흑석동 69-22    | 71 | 등용로10가길 24-6  |
| 32 | 흑석동 69-29    | 72 | 대방동27길 77-1   |
| 33 | 흑석동 69-35    |    | - 이하 여백 -     |
| 34 | 흑석동 69-53    |    |               |
| 35 | 흑석동 69-54    |    |               |
| 36 | 흑석동 69-62    |    |               |
| 37 | 흑석동 69-69    |    |               |
| 38 | 흑석동 69-155   |    |               |
| 39 | 흑석동 74-5     |    |               |
| 40 | 흑석동 74-6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859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동 작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19. 7. 25. ~ 8. 8.
3. 공고대상 : 불법명의 차량 1대

| 연 번 | 자동차등록번호 | 자동차명         | 소유자명 | 운행정지 명령사유             |
|-----|---------|--------------|------|-----------------------|
| 1   | 35루2810 | 마티즈 1.0 DOHC | 이*태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4호 |

4. 공고장소 : 동작구 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5. 공고내용

-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7의2 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제 1호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다. 동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우리구청에서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820-9883)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860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동 작 구 청 장

###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2019.6.25. 시행) 됨에 따라 우리구 자체 규칙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징계면책 요건 정비
- 나. 수사기관이 통보한 ‘기소유예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처리기준 변경
- 다. 채용비리의 징계감경 제외
- 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와 주요 비위 은폐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및 징계감경 배제 적용
- 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바. 징계부가금 제도개선
- 사.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징계 제외
- 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변경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층)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820 - 1221,

FAX : 820 - 9998, E-mail : rudwls051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일부개정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2019-860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국가 또는”을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2조의2제3항을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징계등 혐의자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하며, 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인 경우: 감사원,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도의 감사기구

2. 징계등 혐의자가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해당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감사기구 또는 소

속 시·군·자치구의 감사기구

제3조제2호 중 “참고인증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을 “참고인증지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소제기 결정”을 “공소제기 결정,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결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제9조제1항 중 “제8조 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자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별표 1 비고 8)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별표3 “징계기준에 관한 개별기준”을 “징계기준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1. 복무 및 품위 3. 직무유기 등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으로 하며, 5. 공사 4. 기타 공사관리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참조)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 중 “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8조의 2 제2항”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제2항”으로 하며, 제2호 중 “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5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4]

##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유 형 별   |   | 징계요구<br>(처리기준)          | 징계기준  | 비 고   |
|---|---|-------------------------|-------|---|
| 최초 음주<br>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br>미만인 경우                              | 경징계<br>또는<br>중징계        | 정직~감봉 | 1. “음주운전”이란 「도로<br>교통법」 제44조제1항을<br>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br>하며, 「도로교통법」 제44<br>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br>주측정에 응하지 않은<br>경우를 포함한다.<br>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br>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br>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br>무원을 말한다.<br>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br>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br>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br>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br>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br>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br>용한다. |
|   | 혈중알코올 농도 0.08%<br>이상인 경우 또는<br>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강등~정직 |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파면~강등 |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파면~해임 |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br>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 강등~정직 |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br>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파면~강등 |   |
| 음주운전으<br>로 인적<br>또는 물적<br>피해가 있는<br>교통사고를<br>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 해임~정직 |   |
|   | 사망사고의 경우  |                         | 파면~해임 |   |
|   | 사고 후<br>「도로교통법」<br>제54조제1항<br>에 따른<br>조치를 하지<br>않은 경우 | 물적<br>피해 후<br>도주한<br>경우 | 해임~정직 |   |
|   |   | 인적<br>피해 후<br>도주한<br>경우 | 파면~해임 |   |
| 운전업무<br>관련<br>공무원이<br>음주운전을<br>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br>받은 경우                                   |                         | 파면~해임 |   |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br>받은 경우                                   |                         | 해임~정직 |   |

[별표 6]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 업무와의 관련도              |                  | 비위행위자<br>(담당자) | 바로 위<br>감독자 | 2단계 위의<br>감독자 | 최고감독자<br>(결재권자) |
|-----------------------|------------------|----------------|-------------|---------------|-----------------|
| 업무의 성질                |                  |                |             |               |                 |
| ○ 정책결정 사항             |                  |                |             |               |                 |
| · 중요 사항<br>(고도의 정책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              | 3           | 2             | 1               |
|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4              | 3           | 2             | 1               |
| · 일반적인 사항             |                  | 3              | 1           | 2             | 4               |
| ○ 단순·반복업무             |                  |                |             |               |                 |
| · 중요 사항               |                  | 1              | 2           | 3             | 4               |
| · 경미 사항               |                  | 1              | 2           | 3             |                 |
| ○ 단독 행위               |                  | 1              | 2           |               |                 |

※ 비고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br>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br>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br>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br>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 이라 한다)를<br>하지 아니한다.<br>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br>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br>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br>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br>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br>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br>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2조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br>-----<br>-----<br>-----<br>-----<br>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br>정책, 국가나 -----<br>-----<br>-----<br>----- |

2. (생략)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1. (생략)
  - 2.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4.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 <신설>

③ (생략)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삭제>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징계등 혐의자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하며, 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인 경우: 감사원,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도의 감사기구
- 2. 징계등 혐의자가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해당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군·자치구의 감사기구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  
 -----  
 -----.

1. (생략)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기준 적용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나 경고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 4.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 4. (생략)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1. (현행과 같음)

2. ----- 참고인중지 결정 -----  
-----  
-----.

3. 공소제기 결정,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결정-----

제5조(징계의 감경)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정부 표창 규정」-----  
-----  
-----  
-----  
-----

3. ~ 4.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

6. ~ 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제9조(경고조치) ① 제8조 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br>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1. 성실의무 위반               |                      |  |  |                    |
| <신 설>                    |                      |  |  |                    |
| <신 설>                    |                      |  |  |                    |
| 잔.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비고

1) ~ 7) (생 략)

8)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

9)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경고조치) ① 제8조제2항 -----

-----  
-----  
-----.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br>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1. 성실의무 위반  |                      |  |  |                    |
|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카.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비고

1) ~ 7) (현행과 같음)

8)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

9) (현행과 같음)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구 분                        |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
| <생 략>                      |                            |   |   |                    |
| ※ 비고<br>----- 지방공무원법 ----- |                            |   |   |                    |

[별표 3]

징계기준에 관한 개별기준

| 구 분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         |         |         | 비 고 |
|------------|--|---------|---------|---------|---------|---------|-----|
|            |  | 파 면     | 해 임 이 상 | 강 등 이 상 | 정 직 이 상 | 감 봉 이 상 |     |
| 1. 복무 및 품위 | 1. ~ 2. <생 략>  |         |         |         |         |         |     |
|            | 3. 직무유기 등<br>가. <생 략><br>나. 「서울특별시 등 작구 지방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규정」<br>-----<br>다. ~ 라. <생 략> |         |         |         |         |         | ○   |
| 2. 청렴의 무   | 4. ~ 6. <생 략><br><생 략>   |         |         |         |         |         |     |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구 분                          |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
| <현행과 같음>                     |                            |   |   |                    |
| ※ 비고<br>----- 「지방공무원법」 ----- |                            |   |   |                    |

[별표 3]

징계기준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제1항 관련)

| 구 분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         |         |         | 비 고 |
|------------|---|---------|---------|---------|---------|---------|-----|
|            |   | 파 면     | 해 임 이 상 | 강 등 이 상 | 정 직 이 상 | 감 봉 이 상 |     |
| 1. 복무 및 품위 | 1.~2. <현행과 같음>  |         |         |         |         |         |     |
|            | 3. 직무유기 등<br>가. <현행과 같음><br>나. 「서울특별시 등 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br>-----<br>다.~라. <현행과 같음> |         |         |         |         |         | ○   |
| 2. 청렴의 무   | 4. ~ 6. <현행과 같음><br><현행과 같음>  |         |         |         |         |         |     |

| 구 분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         |         |         | 비 고 |
|----------------|---|---------|---------|---------|---------|---------|-----|
|                |   | 파 면     | 해 임 이 상 | 강 등 이 상 | 정 직 이 상 | 감 봉 이 상 |     |
| 3. 문서 및 관인관리   | 1. ~ 3. <생 략>   |         |         |         |         |         |     |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 1. ~ 2. <생 략>   |         |         |         |         |         |     |
| 5. 공사          | 1. ~ 3. <생 략>:<br>4. 기타 공사관리<br>가. <생 략><br>나. 부당 하도급 목인<br>( <u>건설산업기본법</u><br><u>및 시행령 참조</u> ) |         |         |         | ○       |         |     |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 1. 2. <생 략>   |         |         |         |         |         |     |
| 7. 소송업무        | 1. ~ 3. <생 략>:  |         |         |         |         |         |     |
| 8. 세무행정        | 1. ~ 9. <생 략>:  |         |         |         |         |         |     |
| 9. 보건환경        | 1. ~13. <생 략>:  |         |         |         |         |         |     |
| 10. 산업경제       | 1. ~ 3. <생 략>:  |         |         |         |         |         |     |
| 11. 건설 및 도시행정  | 1. ~18. <생 략>:  |         |         |         |         |         |     |
| 12. 건축 및 주택행정  | 1. ~ 7. <생 략>:  |         |         |         |         |         |     |
| 13. 교통행정       | 1. ~11. <생 략>:  |         |         |         |         |         |     |
| 14. 청소관리       | 1. ~ 5. <생 략>:  |         |         |         |         |         |     |

| 구 분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         |         |         | 비 고 |
|----------------|--|---------|---------|---------|---------|---------|-----|
|                |  | 파 면     | 해 임 이 상 | 강 등 이 상 | 정 직 이 상 | 감 봉 이 상 |     |
| 3. 문서 및 관인관리   | 1. ~ 3. < <u>현행</u> 과 같음   |         |         |         |         |         |     |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 1. ~ 2. < <u>현행</u> 과 같음   |         |         |         |         |         |     |
| 5. 공사          | 1. ~ 3. < <u>현행</u> 과 같음<br>4. 기타 공사관리<br>가. < <u>현행</u> 과 같음<br>나. 부당 하도급 목인<br>( <u>건설산업기본법</u><br><u>및 시행령 참조</u> ) |         |         |         |         | ○       |     |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 1. 2. < <u>현행</u> 과 같음   |         |         |         |         |         |     |
| 7. 소송업무        | 1. ~ 3. < <u>현행</u> 과 같음   |         |         |         |         |         |     |
| 8. 세무행정        | 1. ~ 9. < <u>현행</u> 과 같음   |         |         |         |         |         |     |
| 9. 보건환경        | 1. ~13. < <u>현행</u> 과 같음   |         |         |         |         |         |     |
| 10. 산업경제       | 1. ~ 3. < <u>현행</u> 과 같음   |         |         |         |         |         |     |
| 11. 건설 및 도시행정  | 1. ~18. < <u>현행</u> 과 같음   |         |         |         |         |         |     |
| 12. 건축 및 주택행정  | 1. ~ 7. < <u>현행</u> 과 같음   |         |         |         |         |         |     |
| 13. 교통행정       | 1. ~11. < <u>현행</u> 과 같음   |         |         |         |         |         |     |
| 14. 청소관리       | 1. ~ 5. < <u>현행</u> 과 같음   |         |         |         |         |         |     |

[별표 4]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유 형 별  | 징계구<br>(책<br>기) | 징 계 기<br>준 | 비 고  |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경·중 징계          | 강등·감봉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br>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br>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br>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
|  |                 | 정직·감봉      |  |
|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가 정차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중 징계            | 정직·감봉      |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가 정차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경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정직·감봉      |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 징계            | 해임·정직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파면·해임      |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한해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중 징계            | 파면·정직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한해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해임·강등      |  |
|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가 정차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 징계            | 해임·정직      |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가 정차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해임·정직      |  |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중 징계            | 파면·해임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 정직·감봉      |  |

[별표 4]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유 형 별                                | 징계구<br>(책<br>기) | 징 계 기<br>준 | 비 고   |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또는 중정직      | 정직·감봉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강등·정직      |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 징계            | 파면·강등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파면·해임      |   |
|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가 정차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중 징계            | 강등·정직      |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가 정차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가 정차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파면·강등      |   |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중 징계            | 해임·정직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                                      |                 | 파면·해임      |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중 징계            | 해임·정직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 파면·해임      |   |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중 징계            | 파면·해임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                                      |                 | 해임·정직      |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 징계            | 파면·해임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 해임·정직      |   |

[별표 5]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br>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1. 법-----<br>「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 <생 략>                 |   |   |                      |
| 2. 법-----                                     | <생 략>                 |   |   |                      |
| ※ 비고<br>1. ~ 2. <생 략><br><신 설>                |                       |   |   |                      |

[별표 6]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 업무의 성질<br>업무와의 관련도                | 비위행위자<br>(담당자) | 바로 위 감독자 | 2단계 위의 감독자 | 최고감독자<br>(결재권자) |
|-----------------------------------|----------------|----------|------------|-----------------|
| ○ 정책결정 사항<br>• 중요사항<br>(고도의 정책사항) | 4              | 3        | 2          | 1               |
| • 일반적인 사항                         | <생 략>          |          |            |                 |
| ○ 단순·반복업무                         | <생 략>          |          |            |                 |
| ○ 단독행위                            | <생 략>          |          |            |                 |
| ※ 비고<br>-----표시함.                 |                |          |            |                 |
| <신 설>                             |                |          |            |                 |
| <신 설>                             |                |          |            |                 |

[별표 5]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br>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1. 「지방공무원법」-----<br>「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제2항」-----   | <현행과 같음>              |   |   |                      |
| 2. 「지방공무원법」-----  | <현행과 같음>              |   |   |                      |
| ※ 비고<br>1. ~ 2. <현행과 같음><br>3.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                       |   |   |                      |

[별표 6]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 업무의 성질<br>업무와의 관련도  | 비위행위자<br>(담당자) | 바로 위 감독자 | 2단계 위의 감독자 | 최고감독자<br>(결재권자) |
|---|----------------|----------|------------|-----------------|
| ○ 정책결정 사항<br>• 중요사항<br>(고도의 정책사항)   | 4              | 3        | 2          | 1               |
| • 일반적인 사항   | <현행과 같음>       |          |            |                 |
| ○ 단순·반복업무   | <현행과 같음>       |          |            |                 |
| ○ 단독행위  | <현행과 같음>       |          |            |                 |
| ※ 비고<br>1. -----말한다.<br>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br>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862호

##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동 작 구 청 장

### 1. 개정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반영 및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이상 참여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2조의2)

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심의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 반영(안 제5조의2)

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 구성 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1이상 참여 규정 삽입 (안 제5조의2)

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 심의사항 추가 및 전년도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안 제6조제3호, 안 제11조)

마.「지방회계법」제정에 따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수정 (안 제8조의3)

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어법에 맞게 수정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어르신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

구 장승배기로 161,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복지팀 (전화 : 820-9309, FAX : 820-9882, E-mail : pink701@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이 개정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은행법」, 「신탁업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금운용심의위원

회”로 하고,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 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2년 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노인복지업 무담당주사가”를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로 한다.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8조제2항 본문 중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중 경리관”을 “「지방회계법」중 재무관”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운용성과를 기금운용 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br>조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br>라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br>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br>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br>-----<br>--. |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구”라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 2. ~ 4. (생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 2. (생략)
- 3.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
- 2. ~ 4. (현행과 같음)

② ----- 2024년 12월 31일-----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② ---- 「은행법」-----  
-----.

③ -----  
-----범위-----.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  
----- 사람으-----.

- 1. · 2. (현행과 같음)
- 3. -----  
-----사람으-----

자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신설>

4. (생략)

제8조(기금의 회계관)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신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규칙과「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수당·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생략)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 인---

제6조(위원회의 기능) -----

1. ~ 2. (현행과 같음)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현행 제3호와 같음)

제8조(기금의 회계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노인복지업무담당 팀장인-----

③「지방회계법」중 재무관-----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운용성과를 기금운용 성과분석 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수당·여비 등) ----- 범위-----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866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사망자·소재불명자 등 명의 차량과 폐업한 법인·중고차매매상·개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상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불법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 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동차가 운행정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로 등록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동 작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사전 의견조회 공고
2. 공고기간 : 2019. 7. 25. ~ 2019. 8. 8.(14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처분) 등록 예정 자동차(붙임 참조)
4. 관련근거

-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 2019. 7. 25. ~ 2019. 8. 8.(14일간)
- 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다. 제출내용

- 운행정지명령 미동의시 자동차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이행각서(이행예정일 명시)
- 재판 및 압류·저당의 해지를 위한 비용마련 등의 사유로 재판 종료 혹은 비용마련을 위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
- 기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

- 라. 제출처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교통행정과  
 - 전화 : 02-820-9983

## 6. 처분내용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24조의2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대표자 등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사망자·소재불명자 등 명의 차량과 폐업한 법인·중고차매매상·개인사업자 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운행정지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처리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 라. 기간 내에 상속인·대표자 등이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명령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마. 운행정지명령한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바.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동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공매가 가능합니다.
-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교통행정과(☎02-820-99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발령

[발령 제144호]

가. 육아휴직

| 연번 | 성명  | 발령사항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1  | 임은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br>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br>(2019.7.25.~2019.8.9.) | 보건계약과 | 임기제지방의료기술서기보<br>(운동처방사) |

2019. 7. 25.字.

[발령 제145호]

| 연번 | 성명  | 발령사항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1  | 박은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br>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br>(2019년7월22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 도로관리과  | 지방시설주사보(토목)        |
| 2  | 오정택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br>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br>(2019년7월22일부터 2020년1월21일까지)   | 사회복지과  | 지방사회복지서기           |
| 3  | 정진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br>시간선택제 변경 근무를 명함<br>· 당초:근무시간 14시~18시까지<br>(1주당 총 20시간 근무)<br>· 변경:근무시간 09시~16시까지<br>(1주당 총 30시간 근무) | 자치행정과  | 지방행정서기보<br>(시간선택제) |
| 4  | 서은주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br>시간선택제 변경 근무를 명함<br>· 당초:근무시간 09시~14시까지<br>(1주당 총 20시간 근무)<br>· 변경:근무시간 09시~17시까지<br>(1주당 총 35시간 근무) | 부동산정보과 | 지방행정서기보<br>(시간선택제) |
| 5  | 송소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br>시간선택제 변경 근무를 명함<br>· 당초:근무시간 09시~14시까지<br>(1주당 총 20시간 근무)<br>· 변경:근무시간 09시~17시까지<br>(1주당 총 35시간 근무) | 부동산정보과 | 지방행정서기보<br>(시간선택제) |
| 6  | 곽소라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br>시간선택제 변경 근무를 명함<br>· 당초:근무시간 09시~14시까지<br>(1주당 총 20시간 근무)   | 교통행정과  | 지방행정서기보<br>(시간선택제) |

| 연번 | 성명  | 발령사항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     | · 변경:근무시간 09시~15시까지<br>(1주당 총 25시간 근무)  |         |                        |
| 7  | 장윤주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br>시간선택제 변경 근무를 명함<br>· 당초:근무시간 09시~14시까지<br>· 변경:근무시간 09시~17시까지<br>(1주당 총 35시간 근무)                    | 사당제 1동  | 지방행정서기보<br>(시간선택제)     |
| 8  | 이미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br>시간선택제 변경 근무를 명함<br>· 당초:근무시간 09시~14시까지<br>(1주당 총 20시간 근무)<br>· 변경:근무시간 10시~18시까지<br>(1주당 총 35시간 근무) | 사당제 3동  | 지방행정서기보<br>(시간선택제)     |
| 9  | 이용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br>시간선택제 변경 근무를 명함<br>· 당초:근무시간 09시~14시까지<br>(1주당 총 20시간 근무)<br>· 변경:근무시간 09시~17시까지<br>(1주당 총 35시간 근무) | 사당제 4동  | 지방행정서기보<br>(시간선택제)     |
| 10 | 박윤진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br>시간선택제 변경 근무를 명함<br>· 당초:근무시간 14시~18시까지<br>(1주당 총 20시간 근무)<br>· 변경:근무시간 13시~18시까지<br>(1주당 총 25시간 근무) | 어르신청소년과 | 지방사회복지서기보<br>(시간선택제)   |
| 11 | 김혜옥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br>시간선택제 변경 근무를 명함<br>· 당초:근무시간 09시~14시까지<br>(1주당 총 20시간 근무)<br>· 변경:근무시간 09시~17시까지<br>(1주당 총 35시간 근무) | 상도제 1동  | 지방사회복지서기보<br>(시간선택제)   |
| 12 | 신화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br>시간선택제 변경 근무를 명함<br>· 당초:근무시간 14시~18시까지<br>(1주당 총 20시간 근무)<br>· 변경:근무시간 13시~18시까지<br>(1주당 총 25시간 근무) | 사당제 1동  | 지방사회복지서기보<br>(시간선택제)   |
| 13 | 정지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br>시간선택제 변경 근무를 명함<br>· 당초:근무시간 09시~14시까지<br>(1주당 총 20시간 근무)<br>· 변경:근무시간 09시~17시까지<br>(1주당 총 35시간 근무) | 치수과     | 지방시설서기보<br>(토목)(시간선택제) |

| 연번 | 성 명   | 발령 사항   | 현 직   |                        |
|----|-------|---|-------|------------------------|
|    |       |   | 부 서   | 직 급                    |
| 14 | 임 지 영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br>시간선택제 변경 근무를 명함<br>· 당초:근무시간 09시~14시까지<br>(1주당 총 20시간 근무)<br>· 변경:근무시간 09시~17시까지<br>(1주당 총 35시간 근무) | 건 축 과 | 지방시설서기보(건축)<br>(시간선택제) |

2019. 7. 22. 字

## [발령 제146호]

| 연번 | 성 명   | 발령 사항                        | 현 직   |        |
|----|-------|------------------------------|-------|--------|
|    |       |                              | 부 서   | 직 급    |
| 1  | 최 희 영 | 복 직 을 명 함<br>보 건 소 근 무 를 명 함 | 건강관리과 | 지방간호서기 |

2019. 7. 24. 字

## [발령 제147호]

| 연번 | 성 명   | 발령 사항   | 현 직   |         |
|----|-------|---|-------|---------|
|    |       |   | 부 서   | 직 급     |
| 1  | 이 효 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br>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br>(2019년7월28일부터 2020년4월9일까지)  | 주 택 과 | 지방행정서기보 |
| 2  | 김 서 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br>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br>(2019년7월28일부터 2020년1월27일까지) | 건강관리과 | 지방간호서기  |

2019. 7. 28. 字.

## [발령 제148호]

## □ 근무기간 연장

| 연번 | 성 명 | 발령 사항                                | 현 직     |                       |
|----|-----|--------------------------------------|---------|-----------------------|
|    |     |                                      | 부 서(직위) | 직 급                   |
| 1  | 손화정 | 근무기간을 연장함<br>(2019.7.23.~2020.7.22.) | 정책보좌관   | 지방전문임기제 가급<br>(4급 상당) |

2019. 7. 23.字.

동  
작  
구  
보

제  
1  
6  
1  
1  
호

동  
작  
구



[www.dongjak.go.kr](http://www.dongjak.go.kr)

 동 직 구